

예멘[Yemen]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80년(공공부문), 1987년(민간부문)
- 현행법 : 1991년(공공부문 연금), 1991년(민간부문 연금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제도

3 적용대상

- 공공부문제도 : 준공공기관 정규 근로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
 - 특별제도 : 군인과 경찰
- 민간부문제도 : 예멘 국민, 민간부문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, 해외근로중인 예멘 국민
 - 적용제외 : 자영자, 임시 근로자, 농업 종사자, 가사 노동자, 선원, 어부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공공부문제도 : 월 소득의 6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은 기본급에 보너스와 초과 수당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
 - 민간부문제도 : 월 소득의 6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은 기본급에 보너스와 초과 수당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
- 자영자 : 적용제외
- 사용자
 - 공공부문제도 : 월 임금지급총액의 6%
 - 민간부문제도 : 월 임금지급총액의 9% (노령연금 재원으로만 사용)
- 정부
 - 공공부문제도 : 모든 적자 재원; 사용자로서 기여함
 - 민간부문제도 : 없음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연금(공공부문제도)

- 가입기간 15년 이상 60세(남성),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(여성); 가입기간 25년 이상 50세(남성); 가입기간 20년 이상 46세(여성); 가입기간 30년 이상 연령무관(남성) 또는 가입기간 25년 이상인 자(여성)
- 조기연금 : 가입자가 비자발적 실업자가 된다면, 가입기간 25년 이상인 경우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
- 연금 보조금(퇴직금) : 일반퇴직연령 시에 청구하는 노령연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

• 노령연금(민간부문제도)

- 가입기간 15년 이상 60세(남성) 또는 55세(여성)
- 조기연금 : 가입기간 25년 이상인 50세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(공공부문제도)

- 근로와 관련되지 않은 완전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
- 연금 보조금(퇴직금) : 가입자가 최소 1년의 가입기간을 가졌을 시 장애연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

• 장애연금(민간부문제도) : 업무와 무관한 완전장애로 판정되고 최소 60개월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

• 장애보조금(민간부문제도) : 완전장애로 판정되었어야 하며, 장애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미충족하고, 최소 1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자여야 함

○ 유족급여

• 유족연금(공공 및 민간 부문제도) : 가입자가 일반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 시 지급

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; 무직인 18세 이하의 아들(학생일 시 26세); 무직, 미혼인 딸; 피부양 부모, 조부모, 형제, 자매
- 연금보조금(퇴직금, 공공부문제도) : 사망자가 최소 1년의 가입기간을 가졌을 시 유족 연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

• 장제비(공공부문제도) : 가입자 사망 시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공공부문제도) : <가입자의 마지막 월 총임금 × 보험료 납부 개월 수 ÷ 420>
 - 월 노령연금 최소금액은 21,000 리알(rials)
 - 월 노령연금 최고금액은 가입기간이 최소 35년이라면 가입자 총 월임금의 100%임; 가입기간이 최소 15년이라면 43%
 - 조기연금 : 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됨

- 연금보조금(퇴직금) : <가입자 월 총임금의 9% × 보험료 납부 개월 수>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급여조정 : 공무원 임금 상승분의 50%만큼 급여 조정
- 노령연금(민간부문제도) : 연금은 <지난 12개월 간 가입자 총 월임금액 × 보험료 납부 개월 수 ÷ 420>
- 월 노령연금 최소금액은 가입자의 마지막 월 총임금의 50%
- 조기연금 : 연금은 일반퇴직연령 이전에 인출되는 년도마다 매년 3%씩 감액
- 급여조정 : 공무원 임금 상승분의 50%만큼 급여 조정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공공부문제도) : 연금은 가입자의 마지막 월 총임금의 50% 또는 가입자가 지급 받을 자격이 있는 노령연금의 가치 중 더 큰 금액
- 월 장애연금 최소금액은 가입자의 마지막 월 총임금의 50%
- 유족 보조금(퇴직금) : <가입자의 마지막 월 총임금의 9% × 보험료 납부 개월 수>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급여조정 : 공무원 임금 상승분의 50%만큼 급여 조정
- 장애연금(민간부문제도) : 가입자의 전년도 평균 월임금의 50% 지급
- 장애보조금(민간부문제도) : <가입자 전년도 평균 월임금의 12% × 보험료 납부 연 수>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- 급여조정 : 공무원 임금 상승분의 50%만큼 급여 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공공 및 민간 부문제도) : 사망자의 사망 전 마지막 월 총임금의 50% 또는 최소 월 유족연금액 중 더 큰 금액임. 연금은 지명된 유족 사이에 동등하게 나누어짐
- 최소 월 유족연금액은 21,000 리알(rials)
- 연금보조금(퇴직금, 공공부문제도) : <사망자의 사망 전 마지막 월 총임금의 9% × 보험료 납부 개월 수> 지급
- 급여조정 : 공무원 임금 상승분의 50%만큼 급여 조정
- 장제비(공공부문제도) : 사망자 사망 전 월 평균임금의 2개월 치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장례식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- 사회보장연금청(Social Security and Pensions)
 - 이사회 감독구조로 운영되며, 공공부문제도 관리
 - <http://gasspyemen.org>
- 사회보장공단(General Corporation for Social Security)
 - 3자로 구성된 이사회 감독구조 하에 민간부문제도 관리
 - <http://gcss.ye>

<2018년 ISSA 자료>